

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4. 8. 25.

발 의 자 : 김 정 순 의원
외 2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2004. 9. 2 ~ 9. 3(2일간)까지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계룡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
- 계룡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